세금우대종합저축특약

제 1 조 약관의 적용

세금우대종합저축(이하 '저축'이라 합니다)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, 적립식예금약관, 거치식예금약관,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저축 등의 개별약관에 따릅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

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만20세 이상인 자로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20세 미만인 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- 1.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- 2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
- 3.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- 4. 5·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· 18민주화운동 부상자
- 5.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6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

제 3 조 가입대상 저축

은행이 취급하는 1년이상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, 금전신탁, 수익증권, 채권저축(이하 '예금' 이라 합니다)으로 합니다.

제 4 조 세금우대 요건

① 예금 가입당시 거래처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
- ② 예금의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, 최초 불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③ 양도·양수시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인 및 양수인 각자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.

제 5 조 거래한도

- ① 이 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만 60세 이상인 자, 제2조의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로 합니다.
- ② 제1항의 거래한도는 다음 기준에 의해 정합니다. 이 경우 원가 금액은 제외하고 한도를 산정하며, 저축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수익자를 기준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.
- 1. 거치식예금은 거래처가 가입한 예치원금으로 합니다.
- 2. 정액(정기)적립식 예금은 월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3. 자유적립식 및 추가 불입이 가능한 거치식 예금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합니다.

제 6 조 거래한도 변경

거래처가 제5조 제2항 제3호의 거래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융기관에 변경내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제 7 조 세금우대 처리

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.

제 8 조 표시방법

은행은 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·내지·거래내역서 등에 「세금우 대종합저축」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
제 9 조 적용이율

이 저축으로 가입하는 각 예금의 적용이율은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제 10 조 특별중도해지

- 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사망· 해외이주 또는 해지전 6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거래하더라도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..
- 1. 천재· 지변
- 2. 저축자의 퇴직
- 3. 사업장의 폐업
- 4.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
- 5.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 허가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언
- ② 제1항 각 호의 1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전 6월이내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제 11 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정보제공

-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에 고객별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출하고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② 금융기관은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(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)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(수익자 포함)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